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25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이달희 · 윤한홍 · 유용원
임종득 · 임이자 · 김정재
서천호 · 김종양 · 이만희
김상훈 · 김재섭 · 고동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78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의2(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하고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선거일 후 10일까지 실시하여 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검증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그 보고 및 공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8조의2(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선거일 전 10일까지 점검하고 투표·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선거일 후 10일까지 실시하여 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검증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산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전산조직 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전산조직의 점검과 검증, 그 보고 및 공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u>

	<u>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